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476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redacted]시

피고, 항소인 [redacted]공사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합5457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30.

판 결 선 고 2017.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redacted] 주식회사로부터 83,001,210원 및 별지3 목록 각 '지출비용'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각 '지출일'란에 기재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1, 2-2, 7-2 기재 각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2011. 8. 3. 신탁계약 종료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redacte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2-1, 3 내지 5 기재 각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2-2 기재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각 2011. 8. 3.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redacted]는 [redacted]시 [redacted]리 산 3-1 임야 33,849㎡ 및 같은 리 산 3-3 임야 24,793㎡(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힐스 아파트(현재 명칭,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redacted]는 2007.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redacted]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토지 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redacted]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redacted]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하는 데 있다.

제10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redacted] 및 [redacted]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피고로 한다.

제13조(수익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redacted]가 지급하되 [redacted]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피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가 지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7. 기타 위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피고가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

⑤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3항과 같이 처리한다.

⑥ 피고는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당해연도 피고의 외부차입금 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래알에이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미래알에이씨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되 미래알에이씨와 피고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23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미래알에이씨가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양계약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미래알에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원본과 수익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인도한다.

다. 피고와 [redacted]는 2007. 11. 13. 이 사건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edacted]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규정이 정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다(전문).
○ 피고가 보증한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배상한다(제9조 제1항).
○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한다(제10조).
○ [redacted]가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사전의 통지와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redacted]와 연대보증인이 피고에 담보로 제공한 제담보물을 언제든지 임의처분하여 피고 채권 및 제부대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다(제12조).

라. 피고는 2007. 1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redacte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1. 6. 30. 사용승인을 받아 2011. 8. 3.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즈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주택분양도 완료되었다.

마. 2011. 4.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redacted]리 산3-1 임야 33,849㎡는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 및 [redacted]리 산3-1, 10, 11로, [redacted]리 산3-3 임야 24,793㎡는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사건 제1 부동산 및 [redacted]리 산3-12로 각 분할되었다.

바. [redacted]의 채권자들 및 [redacted]시장은 [redacted]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압류하였다.

사. 한편 [redacted]의 채권자인 [redacted]개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redacted]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15947)를 제기하였는데, [redacted]지방법원은 2012. 9. 20.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순번 2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redacted]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13.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종전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 32, 33, 40,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종전 사건에서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전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전소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주택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어 신탁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미래알에이씨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2-1, 3 내지 5 기재 각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1. 8. 3.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실, 종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주택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와 미래알에이씨 사이의 정산과 상관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라 미래알에이씨에 대하여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2 목록 순번 2-1 기재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래알에이씨에 대하여 2012. 6. 8.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종전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미래알에이씨는 2012. 9. 27. 종전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과 종전 사건은 '신탁목적 달성에 따른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그 소송물이 동일하고, 종전 사건의 공동피고로서 판결정본을 송달받기까지 한 [redacted]는 자신의 채권자인 [redacted]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redacted]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소에도 종전 사건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는 것인데, 종전 사건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동일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2011. 8. 3.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어서 두 사건의 등기원인인 신탁계약 종료일이 상이하고, 더욱이 신탁종료일이 상이할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수익금 정산금 액수가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종전 사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사건이나 이 사건 청구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주택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어 양 청구는 동일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실관계와 실체법상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점, ② 다만 종전 사건에서는 [redacted]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종전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6. 8.을 신탁계약 종료일로 보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이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그 원인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고(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점(원고 역시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주택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만을 등기원인으로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종료일은 명시하지도 않았다), ③ 신탁계약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신탁종료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탁종료일이 상이하다고 하여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수익금 정산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 종료일이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와 종전 사건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래알에이씨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26. 미래알에이씨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488,673,600원을 납기일 2012. 7. 5.로 정하여 부과한 사실, 미래알에이씨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redacte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 등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redacted]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종료하는데, 2011. 8. 3.경 미래알에이씨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택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2-2 기재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구권에 대하여 위 순번 2-2 기재 압류 외에도 순번 1, 7-2 기재 각 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edacted]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1, 2-2, 7-2 기재 각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2011. 8. 3.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여 [redacted]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임의처분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하 '자조매각권'이라 한다)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미래알에이씨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redacted]가 피고에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더라도, 각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redacte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각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로 인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후 각 압류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더라도 [redacted]가 새로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가 없는바, 장래의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은 [redacted]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의 [redacted]에 대한 구상권과 미래알에이씨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권을 인정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이나 소송비용으로서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 혹은 그에 부대하여 부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래알에이씨가 위 주택분양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주장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에게 비용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자조매각권이 있는 사실(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점에다가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재 의의를 갖는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에게 비용상환청구권 및 자조매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알에이씨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비용상환의무 선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redacted]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재산세,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는 이를 지급받으면 [redacted]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으므로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미래알에이씨에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은 신탁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신탁종료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이 사건 신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출한 비용이라면 피고는 [redacted]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redacted]의 위 비용상환의무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가 그 선이행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액 등을 다투면서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의 선이행채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등 참조).

[redacted]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범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2011. 8.경 이후 8개월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별지2 목록 순번 2 기재 압류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그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후 지출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지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전에 별지2 목록 순번 1 기재 압류명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가) 재산세 (인정)

을 제5 내지 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2014년도 재산세 4,261,060원, 2015년도 재산세 5,017,650원, 2016년도 재산세 5,752,510원 합계 15,031,2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산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재산세 상당 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0805 사건의 소송비용 (인정)

(1) 을 제36,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redacted]개발 주식회사가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건설 및 입주금 관리협약에 따라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10805), 피고가 이에 응소하면서 2012. 2. 17.경 변호사수임료 착수금으로 3,300,000원을, 2012. 5. 7.경 위 사건의 성공보수금(소취하) 명목으로 4,125,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제10조 제2호)인 분양대금(입주금, 이하 '분양수입금'이라고 한다)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소 제기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래알에이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사건의 소송비용 합계 7,425,000원(= 3,300,000원 + 4,125,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사건의 소송비용의 각 지출일로부터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5. 26.에 이르러 위 각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미래 알에이씨를 대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 응소하면서, 2016. 3.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피고가 지출한 재산세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소송비용 등 대지급금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redacted]로부터 비용상환의무를 이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까지 계속 중인 사실, 피고는 2016. 8. 25.자 항소이유서에서도 '추가로 제기된 소송·가압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2017. 5. 26. 이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10805 사건의 소송비용 상환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를 근거로 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redacted]지방법원 2012가합8803 사건의 소송비용 (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 을 제37,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심우필 외 165인이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redacted], 제3채무자 피고로 된 [redacte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사업장의 지정해제에 따른 분양수입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분양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redacted]지방법원 2012가합8803), 위 소송에서 2013. 4. 16. '심우필 외 165인이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장래에 발생하는 [redacted]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입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은 것인데, 입주금 관리협약 종료시 정산금이 남지 않아 피고가 미래알에이씨에 반환할 분양수입금이 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우필 외 165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2. 5. 31.경 변호사수임료 착수금으로 5,156,800원을, 2012. 5. 10.경 위 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 6,455,010원을, 출장비로 658,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분양수입금)에 관한 소송에 정당하게 응소하는 과정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 합계 12,269,810원(= 5,156,800원 + 6,455,010원 + 658,000원)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피고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redacted]는 피고에게 위 12,269,81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라) [redacted]고등법원 2013나18457 사건의 소송비용 (인정)

[redacted]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redacte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redacted] 지방법원 2012가합3354), 위 소송에서 2013. 1. 18. 다성개발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가 항소한 사실([redacted]법원 2013나18457), 그 항소심 소송에서 2014. 5. 22. '[redacted]개발의 [redacte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redacted]개발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 피고가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항소심 소송비용으로 2013. 4. 8.경 5,335,540원을, 2014. 6. 27.경 4,811,14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38, 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정당하게 응소하는 과정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 합계 10,146,680원(= 5,335,540원 + 4,811,140원)은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

마) [redacted]지방법원 2013가합7368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 소송비용 (불인정)

을 제18, 20 내지 2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redacted]는 2011. 10. 13. 피고에게 2건의 소송에 관한 유보금 6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J 외 2인이 피고를 상대로 'J 외 2인은 채무자를 [redacted], 제3채무자를 피고, 압류 및 추심 대상채권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redacted]와 피고 사이의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입주금관리협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redacted]와 [redacted]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결과([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2804 추심금 사건 및 2011가합10188 업무대행수수료 사건)에 따른 채무의 부담에 대비하여 [redacted]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redacted]은행 계좌([redacted])에 유보하여 보관해 둔 6억 원(피고는 이를 관리채권예수금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에서 2013. 11. 30. 현재 잔액 284,000,000원 중 원고(J 외 2인)별 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위 분양유보금 중 J 외 2인의 청구금액을 추심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redacted]지방법원 2013가합73688), 피고는 이에 대해 '위 유보금은 [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2804, 2011가합10188 사건을 포함하여 [redacted]가 시행한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redacted]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송비용 전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인데, 2014. 11. 4. 현재까지 관련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유보금이 89,958,922원이고, 위 유보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반환 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경합하고 있어 위 잔액 모두를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유보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유보금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2804, 2011가합10188 관련 소송비용만을 담보하므로, 그 외 다른 소송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위 유보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가 유보금 전액을 공탁한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일부 지연손해금만 제외하고 J 외 2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한 채 '설령 위 유보금이 위 2건의 소송 관련 비용만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해 [redacted]에 대하여 그 외 다른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유보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보금은 89,958,922원만이 남게 되고, 피고가 위 금액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유보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실([redacted]고등법원 2015나2015144호), 항소심법원은 '위 소송비용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 제10조의 "보증사고 발생 시 주택의 분양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 등 주택분양보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한 부대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redacted]에 대한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상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유보금의 담보 범위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 제10조의 부대채무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나 대법원은 2017. 1. 12. 항소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대법원 2015다247714)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redacted]로부터 위 유보금으로 담보되는 소송이 2건임을 명시하여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추심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정 제10조의 부대채무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다른 사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바) [redacted]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32 사건의 소송비용 (인정)

을 제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edacted]의 채권자인 A 등 14인이 [redacte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redacted]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32), 위 소송에서 2015. 11. 5. A 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A 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여 소송비용으로 2014. 12. 29.경 6,288,700원을, 2015. 11. 12.경 7,337,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 목적의 달성으로 종료되었을 뿐 해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수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한 경우 신탁자의 소유권이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등기청구에 응하여야 할 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13,625,700원(= 6,288,700원 + 7,337,000원)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

사) 이 사건 소송비용 (제1심 소송비용 인정, 당심 소송비용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응소하여 [redacted]의 비용상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해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6. 6. 30.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redacted]의 비용상환 및 압류의 해제를 선이행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비용상환 및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1, 6, 7의 각 압류의 해제를 추가적으로 주장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비용으로 2015. 10. 2.경 7,151,100원, 2016. 7. 27.경 3,938,000원을, 당심 소송비용으로 2016. 10. 14.경 7,15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0,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제1심 소송비용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98다22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응소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 소송비용 합계 11,089,100원(= 7,151,100원 + 3,938,000원)은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당심 소송비용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별지2 목록 순번 1, 6, 7 기재 각 압류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6. 5. 18. 이전인 2011. 5. 17., 2013. 7. 18., 2014. 9. 11. 각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제1심에서도 위 각 압류의 해제를 선이행 조건으로 할 것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주장하였고, 달리 피고가 제1심에서는 위 각 압류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과실로 지출한 것이어서 [redacted]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당심에서 비용상환청구 주장도 추가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해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redacted]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redacted]지방법원 2016가합53609 사건의 소송비용 (인정)

을 제3, 43,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redacted]개발이 2016. 6. 23.경 [redacte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2. 11. 7.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redacted]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17.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여 2016. 10. 14.경 4,147,000원, 2017. 6. 26.경 4,84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redacted]개발의 소 제기 당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압류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redacted]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8,987,000원(= 4,147,000원 + 4,840,000원)은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redacted]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자) [redacted]지방법원 2017가단101744 사건의 소송비용 (불인정)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J 외 2인(위 [redacted]지방법원 2013가합73688 사건의 원고들)을 상대로 'J 외 2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액, J 외 2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피고가 J 외 2인 앞으로 변제공탁한 금액을 공제하면 위 [redacted]지방법원 2013가합73688 사건의 판결금은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J 외 2인은 위와 같은 변제충당 및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소 제기를 위하여 2017. 2. 10.경 2,596,534원을, 2017. 5. 24.경 2,31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기한 위 소송은 피고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제기한 것에 불과할 뿐 달리 위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내지 종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redacted]지방법원 2017가합52122 사건의 소송비용 (인정)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redacted] 개발을 상대로, [redacted]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종전 사건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가 추가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위 소 제기 과정에서 2017. 5. 19.경 4,162,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을 위하여 제3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대하여 응소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947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을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4,162,700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

카) 재산조사비용 (인정)

피고는 2016. 5. 20.경 [redacted]개발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성개발이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않아 [redacted]개발에 대한 재산조사비용으로 132,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2017. 4. 10.경 [redacted]에 대한 재산세 대납금 및 소송대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도 [redacted]가 이를 상환하지 않아 [redacted]에 대한 재산조사비용으로 13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4호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재산조사비용은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상환받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redacted]는 피고의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피고에게 위 인정 비용 합계 83,001,210원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출비용'란에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출일'란에 기재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redacted]로부터 83,001,210원 및 별지3 목록 각 '지출비용'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각 '지출일'란에 기재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redacted]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순번 1, 2-2, 7-2 기재 각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2011. 8. 3.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권순민

판사 최항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별지1]

부동산 목록

1.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산3-3 임야 23,762㎡
2.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산3-7 임야 497㎡
3.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산3-8 임야 2,719㎡
4.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산3-9 임야 2,302㎡. 끝.

[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압류 목록

순번	사건번호	당사자	피압류채권	청구금액	결정일
1	[redacted]지방법원 2011타채11495	채권자 주식회사 [redacted]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주식회사	채무자가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73,973,671원	2011. 5. 17.
2 2-1	[redacted]지방법원 2012타채4932	채권자 [redacted]건설 주식회사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채무자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6,206,705,405원	2012. 4. 10.
2 2-2	[redacted]지방법원 2012타채4932	채권자 [redacted]건설 주식회사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채무자가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6,206,705,405원	2012. 4. 10.
3	[redacted]지방법원 2012타채6386	채권자 주식회사 [redacted]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채무자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500,000,000원	2012. 4. 26.
4	[redacted]지방법원	채권자 B	채무자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	263,837,660원	20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2013타채4461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무상으로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3. 22.
5		[redacted]지방법원 2013타채5284	채권자 [redacted]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채무자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1,532,430,130원	2013. 5. 24.
6		징수세과외 14117호	압류권자 [redacted]시장 체납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88,673,600원	2013. 7. 18.
7	7-1	징수세과외 19502호	압류권자 [redacted]시장 체납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977,347,200원	2014. 9. 11.
	7-2	징수세과외 19502호	압류권자 [redacted]시장 체납자 [redacted] 주식회사 제3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977,347,200원	2014. 9. 11.

끝.

[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비용 목록

순번	구분	관련 내용	지출비용(원)	지출일
1	재산세	2014년도	4,261,060	2014-09-30
2	재산세	2015년도	5,017,650	2015-09-30
3	재산세	2016년도	5,752,510	2016-09-30
4	소송비용	[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10805	3,300,000	2012-02-17
5			4,125,000	2012-05-07
6	소송비용	[redacted]고등법원 2013나18457	5,335,540	2013-04-08
7			4,811,140	2014-06-27
8	소송비용	[redacted]남부지방법원 2012가합8803	5,156,800	2012-05-31
9			6,455,010	2013-05-10
10			658,000	2013-05-10
11	소송비용	[redacted]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32	6,288,700	2014-12-29
12			7,337,000	2015-11-12
13	소송비용	[redacted]지방법원 2015가합54575	7,151,100	2015-10-02
14			3,938,000	2016-07-27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16	소송비용	[redacted]지방법원 2016가합53609	4,147,000	2016-10-14
			4,840,000	2017-06-26
17	소송비용	[redacted]지방법원 2017가합32122	4,162,700	2017-05-19
18	재산조사	[redacted]개발	132,000	2016-05-20
19	재산조사	[redacted]	132,000	2017-04-10
계			**83,001,210**	

끝.